

2021년

단란주점 영업자

위생교육재

- 단란주점업 신규 및 기존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내지 54조의 규정에 의해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으며 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중앙교육원

**우리협회 지회(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① 단란주점업의 발전 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 ②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자율지도**
 - ▶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 ▶ 영업자준수 사항에 관한 지도
 - ▶ 자율지도 점검으로(한 업소당 년2회) 법정임검 같음
- ③ 신규영업주 및 기존영업주 법정 위생교육 실시**
- ④ 회원에 대한 영업의 경영개선 지도**
 - (명의변경, 장소이전, 구조변경, 상호변경 등 각종인허가 업무 대행 및 상담)
- ⑤ 회원 및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⑥ 행정제도 개선 및 세제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사항**
- ⑧ 정부 유관기관과 관계 당국의 시책에 협조**
- ⑨ 회보지 발간 및 기타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 ⑩ 법률자문(협회 고문 변호사)**
- ⑪ 업소 세무·경영지도**

※ 우리협회 지회(부)에서는 불합리한 세제와 행정제도의 개선과 일반음식, 라이브주점 및 불법, 변태업소의 척결 등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의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 미납과 미등록 회원께서는 업계 발전과 업권 수호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담당직원 또는 지회(지부)에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에 함께하겠습니다.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중앙교육원장 이부규

우리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중앙교육원은 26년동안 식품위생교육을 통하여 단란주점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의 중요성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민보건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건전한 음주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큰역할을 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등으로 인하여 영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동참해 주시는 단란주점 영업자 및 교육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회 중앙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동참에 대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하기위해 각종 재난지원금과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영업할 때 얻어야 할 순이익의 수준으로 손실을 보상하고자 유관기관과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자로서 자랑스러운 위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단란주점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활력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위생교육의 필요성을 어느때보다 크게 요구받고 있어 교육내용의 다양화 및 질적개선을 통한 정보전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에서는 경영의 선진화, 주점업계의 풍토쇄신, 준법정신고취 등 보다 유익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교육의 질적향상에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이번교육이 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국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보람된 교육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는 단란주점경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식품위생교육, 자율지도, 제도개선 및 각종 정책간의 활동등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동업자조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국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원칙과 신뢰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최선의 영업환경을 만드는데 혼신하는 중앙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중앙교육원

목 차

I .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의 목적 및 정의	11
2. 식품등의 취급	13
3. 검사 등	14
4. 영업	21
1) 식품접객업 영업의 종류	21
3) 단란주점업 시설기준	22
5) 영업허가 등	23
7) 영업승계	29
9) 식품위생교육	33
1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38
5. 행정제재	43
1) 행정처분의 종류	43
3) 행정처분 개별기준(식품접객업)	46
4) 과징금	50
6) 벌칙	54
6. 수수료	58

II . 식중독 예방과 관리

1. 식중독 예방	61
2. 감염병예방 조치와 처벌기준	65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감염병 관련부분)	67
4. 위생관리	69

III . 단란주점 세무상식

- 부 록 -

I . 청소년 보호법	87
II . 자율지도	93
III . 소방관련법규	101
IV . 저작권료(음악 저작물 사용료) 안내	111
V . 전국지회 · 지부현황	119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실천강령]

1. 식품위생교육기관인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는 영업자의 식품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위생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公正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3.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자 식품위생 교육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4.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공공업무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영업자인 국민을 향해 성심성의껏 봉사한다.
5.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비는 식품위생교육에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 운영실태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르고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7.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은 1차 대민접점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영업자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2021년 1월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중앙교육원



[식품영업자 위생교육 이수안내문]

우선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인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의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게 된 영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는 1995.01.01부터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교육받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공급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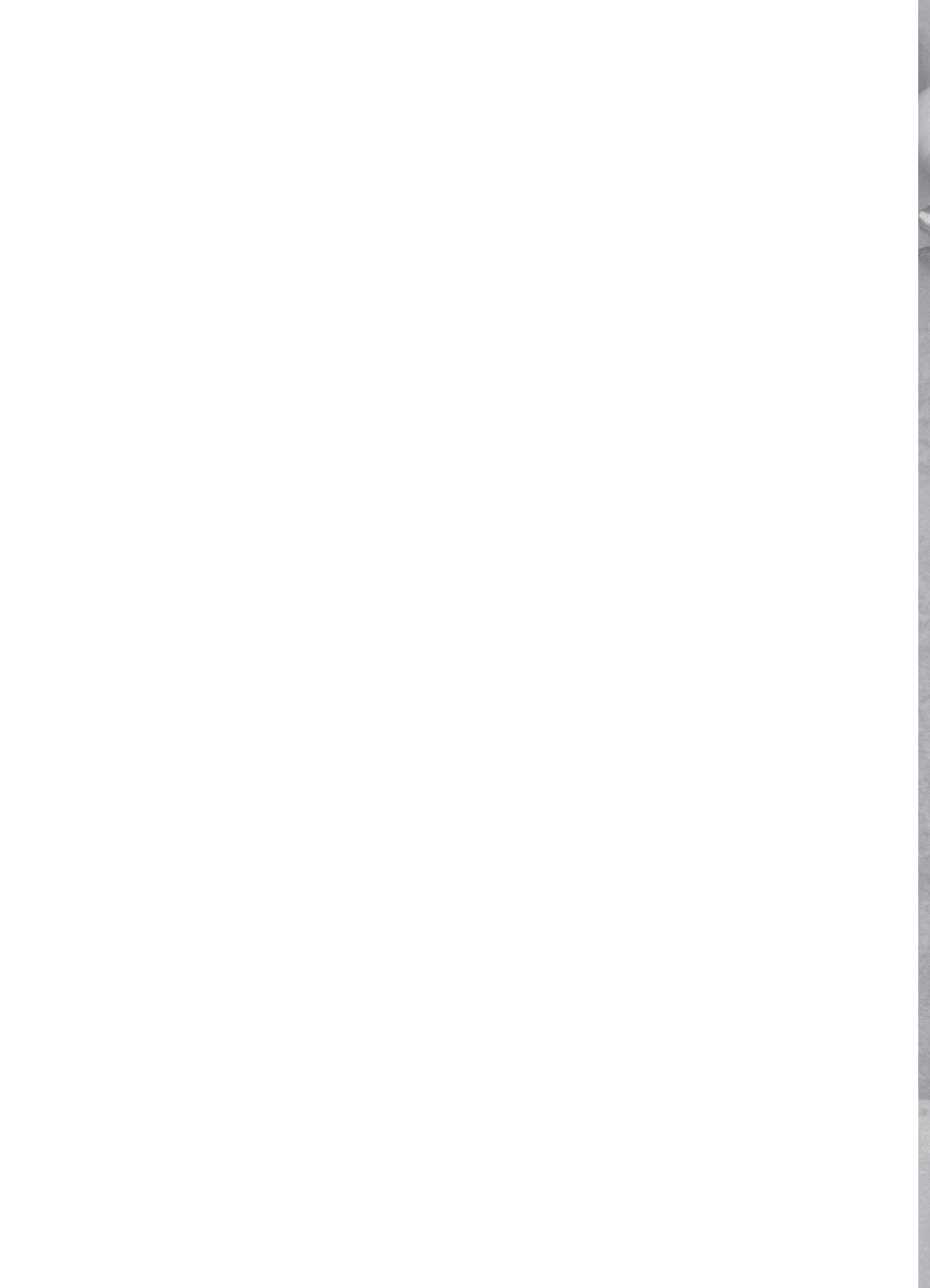
그러므로 식품영업자인 여러분들께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이라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영업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할 식품 위생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 관계로 위생교육 및 영업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업자 일선점점 창구이자 업무 수탁기관인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에 먼저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적극 이용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식품위생교육기관도 더욱 성실히 영업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교육 받게 될 식품위생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중앙교육원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의 목적 및 정의

가. 목적(법 제1조)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법 제2조, 영 제2조)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에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에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운반·진열 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 · 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전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을 제조 · 운반 · 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9.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0.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마. 산업체
11.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 · 가공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 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3.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2. 식품 등의 취급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법 제3조, 규칙 제2조[별표 1])

[법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 채취 · 제조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규칙 제2조 관련)

1.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 제조가공실 · 조리실 ·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 변질이 쉬운 것은 냉동 · 냉장시설에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 등의 보관 · 운반 · 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 · 냉장시설 및 운반 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 등의 제조 · 가공 ·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 · 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 · 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컵라면 · 일회용 달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는 경우 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67조	30	60	90

3. 검사 등

가. 식품위생감시원 (법 제32조, 영 제16조 및 제17조)

[법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을 말한다.



-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 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영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임·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 그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영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 · 시간 · 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8. 12.11.] [시행일 : 2019.12.12.] 제17조의2

[규칙 제31조의39(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1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매년 7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영 제16조의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
- ③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 점검 및 수거 · 검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법 제33조, 영 제18조, 규칙 제32조)

[법 제33 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2. 유통 중인 식품등이 「식품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른 표시 · 광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개정 2018.3.13] [시행일 2019.3.14]
 3.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 (解囑)하여야 한다.
1.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 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18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③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 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단독출입의 승인 절차와 그 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소속 단체(단체에 소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 ⑧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32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생략) 및 [별지 제25호서식](생략)과 같다.

다.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법 제35조, 영 제20조, 규칙 제35조제3항[별표13])**[법 제35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에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받은 영업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하게 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위생점검의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 제20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말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35조 (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생략)]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 업자의 경우 :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서류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 받은 영업자의 경우 “취수원, 배수시설 등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 표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서류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생략)]의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그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3에 따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사항은 제품·포장·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영업

식품점객영업의 종류

1) 식품점객영업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및 영 제21조)

영업의 종류	범위
휴게음식점영업	간단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함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허용
•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 허용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함

2)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법 제37조 및 영 제23조, 제25조)

가. 허가 대상 업종

- 허가 대상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나. 신고 대상 업종

- 신고대상 :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다. 허가/신고 관청

-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3) 단란주점업 시설기준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①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의 설비 금지.
 - ②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함.
- 객실에는 잠금장치 설치 금지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단란주점업 허가조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상업지역이어야 한다.
2. 학교보건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영업하고자 하는 장소가 학교(유치원 포함) 및 학원 등의 통학로에 저촉이 되는지 심의
3.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영업장면적이 공유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포함해서 150m²미만(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한다.

※ 건축물용도가 상업지역 위락시설인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음.
4. 영업장 내부의 시설물에 대해 관할 소방서의 안전점검을 받아 소방시설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가입)
 - 소화시설 : 소화기, 영업장소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비상벨, 휴대용비상조명 등
 - 피난시설 : 피난안내도(피난안내영상물 방영 포함), 유도등, 비상조명 등
 - 시설물 : 인테리어, 쇼파 등에 대한 방염처리
 - 방화시설 : 비상구, 영업장소에 따라 방화문 설치
 -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5) 영업허가 등 (법 제37조)

[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 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 신고를 할 수 없다.
-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보부법」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영업허가 (제24조, 규칙 제40조 및 제41조)

* '법'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을 칭한다.

[영 제2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6호 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영 제24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규칙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중이용영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중이용영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영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 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영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 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41조 (허가사항의 변경)]

-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허가 사항 변경 신청 · 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 세척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 · 신고서에 허가증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신설 2019. 11. 20. >

(2) 폐업신고 (법 제37조, 규칙 제44조)

[규칙 제44조 (폐업신고)]

- 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 ③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 · 폐업의 신고)

⑤ 법령에 따라 허기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법 제37조, 규칙 제47조의2)

[규칙 제47조의2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 ‘규칙’이라함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말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6) 영업허가 등의 제한 (법 제38조)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3. 18., 2018. 3. 13., 2019. 4. 30.>
1. 해당 영업 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6.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7) 영업 승계 (법 제39조, 규칙 제48조)**[법 제39조 (영업 승계)]**

-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혜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칙 제48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2.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8. 6. 28. >
- ③ 혀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8. 19>
-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8) 건강진단 (법 제40조, 규칙 제49조 및 제50조)

[법 제40조 (건강진단)]

-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리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

-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칙 제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건강진단 미검진자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40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20	40	60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아. 법 제40조제3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가)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미만 위반 2)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10	20	30
		50	100	150
		30	60	90
		30	60	90
		20	40	60
		100	200	300

9) 식품위생교육 (법 제41조, 영 제27조, 규칙 제51조~제54조)

[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통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비당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9. 12. 3.>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신설 2019. 12. 3.>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영 제27조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 6. 제21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자



7. 제21조제7호의 용기 · 포장류제조업자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규칙 제51조 (식품위생교육기관 등)]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 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 ②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 ③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교육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다.

[규칙 제52조 (교육시간)]

-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 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 3시간
 2.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통주점영업의 유통종사자 : 2시간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는 자 : 3시간
-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8시간
 2.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 4시간
 3. 영 제21조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 6시간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 : 6시간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
 -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혀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자가 기존 영업의 혀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규칙 제53조(교육교재 등)]

- 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규칙 제54조(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1조제1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 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20	40	60
차. 법 제41조제5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10	20	30
		20	40	60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자(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영업의 제한 (법 제43조, 영 제29조)

[법 제43조 (영업제한)]

-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한다.

[영 제28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44조, 영 제29조, 규칙 제57조[별표17])

[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 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 · 보관 · 진열 ·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 · 채취한 야생생물을 이를 식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을 유혹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혹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 제44조제2항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 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력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의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정지처분감경(2016. 8. 2. 개정)



-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일)
-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홍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홍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홍종사자를 고용 ·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와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 가.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 의 살균 · 소독제, 열탕, 자외선살균 또는 전기살균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란주점

※ 업종표시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주 류	안 주 류
골든블루: 17년 150,000 원 80,000 원	과 일: 30,000 원
임페리얼: 17년 150,000 원 90,000 원	오 징 어: 20,000 원
킹 덤: 17년 원 12년 원	마른안주: 20,000 원
원 자: 17년 150,000 원 90,000 원	알포,한치: 20,000 원
스카치블루: 17년 150,000 원 100,000 원	
맥 주: 4,000 원	

* 모든 메뉴의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지회

※ 가격표(예시)

- 자. 영업허가증 · 영업신고증 · 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만 해당한다)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 · 식생활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들이 보기 쉬운 곳에 제시하여야 한다.
-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통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통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2) 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영업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큐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
 - 4)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6) 휴게음식영업중 주로 다류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 (유흥점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하.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버.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 안에 설치된 무대시설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행정제재

1) 행정처분의 종류 (법 제71조 및 규칙 제89조)

[용어 의미]

- 행정처분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 행위(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품목류제조정지,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영업소폐쇄 등)
- 벌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징역, 벌금)
- 과징금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총칭으로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담하는 것
-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행정의무불이행시 부과(건강진단, 위생교육의무 위반 등)
- 벌금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서 과료 ·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음
- 과료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로서 벌금보다는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진다는 점에서 벌금과 다름

[처분]

- 차수 적용 최근 1년간(법 제4조~제6조 및 제8조 위반은 3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 원인제공자 처분 제품의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가 해당 제품의 제조, 가공, 운반, 진열, 보관 또는 판매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원인 제공자 처분
- 행정처분 경감 기준
 - 식품점업체소에서 경미한 위반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식중독 발생시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 유해물질의 혼입을 예상할 수 없고 고의성 없는 최초의 사례
- 공통찬통, 소형찬기,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 포장 등 음식 문화 개선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하여 경감
-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규칙 제 89조)

-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함
-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 받아 제조·가공 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법 제8조 및 법 제19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함)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함)를 한 경우에 적용함. 다만, 식품 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함.
-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함.
- 바. 제(마)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 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 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함.
- 사.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안됨. 다만, 식품집객업자가 별표 17 제6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 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함.



- 아. 제(가)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 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봄.
- 자.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함.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함.
-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 정지 6개월의 처분.
 -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최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식품 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
- 자. 식품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가 해당 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함. 다만, 유통전문 판매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 1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 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함.
- 카.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된 식품에서 검출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식품접객업의 행정처분 개별 기준의 제1호다목2를 적용함.
- 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별기준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8. 법 제36조 및 법 제 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4조 및 법 제 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5일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2개월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5일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 75조	영업정지15일 시정명령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1개월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 · 파목 · 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 2) 별표 17 제7호다목 · 타목5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우 3) 별표 17 제7호타목2 · 7 · 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 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 3), 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5) 별표 17 제7호 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 75조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1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3개월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 75조			
가. 청소년을 유혹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혹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2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1조 및 법 제 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 75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 75조	영업정지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다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제6호 자목 · 머목은 제외한다.)	법 제71조 및 법 제 75조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단란주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 2019년 7월말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필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1차	2차	3차
시설기준	1. 칸막이 객실설치 기준위반	개수명령	15일	1월
	2.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7일	15일
	3. 영업장 시설변경 및 축소 확장	개수명령	15일	1월
	4. (1) 유통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 설치한 때	개수명령	1월	2월
영업자준수사항	(2)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 무대장치, 특수조명,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한 때	개수명령	1월	2월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때	개수명령	15일	1월
	5. 업소내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	2월	3월	취소
	6.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 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월	3월	취소
	7. 청소년 출입	1월	2월	3월
	8. 청소년 주류제공	2월	3월	취소
	9. 청소년 고용	3월	취소	
	10. 청소년 유통 접객행위 (청소년을 유통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통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취소,폐쇄		
	11. 허가를 받은 상호명과 업종명 표기 여부	시정명령	7일	15일
	12. 허가증 미보관, 가격표시 미게첨	시정명령	7일	15일
	13. 불법, 음란영상물 상영(사용)	1월	2월	취소
	14. 호객(유객)행위	15일	1월	3월
	15. (1)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통접객행위를 하였을 때	1월	2월	취소
	(2)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1월	2월	취소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달리를 조리 판매하는 행위	15일	1월	3월
	(4)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15일	1월	3월
	(5)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2월	3월	취소
	16. 영업정지증 영업행위	취소		
	17. (1)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판매목적 보관시	15일	1월	3월
	(2)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판매에 사용시	1월	2월	3월



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1차	2차	3차
소방법 (다중 이용 방법)	1. 비상시 피난 및 소방활동 불가능(폐쇄, 잠금, 훼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2.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3.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처벌내용		
		적용법규	벌 칙	
	1.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29조 제1항	3년이하	3천만원
	2.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29조 제1항	2년이하	2천만원
	3.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 목1) · 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 물건을 판매 · 대여 · 배포(자동기계장치 · 무인판매장치 ·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 · 대여 · 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제28조 제1항	2년이하	2천만원
	4. 19세미만 고용 · 출입금지업소 스티커 미부착 -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제29조 제6항	2년이하	2천만원

*유의 :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은 1년임.

4) 과징금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 중에서 조세를 제외한 총칭으로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으로 부담하는 것

[과징금 산정 기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다~라(생략)
-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백만원)	1일 과징금(만원)	등급	연간매출액(백만원)	1일 과징금(만원)
1	20 이하	5	14	750 이하 ~ 850 이하	94
2	20 초과 ~ 30 이하	8	15	850 초과 ~ 1,000 이하	100
3	30 초과 ~ 50 이하	10	16	1,000 초과 ~ 1,200 이하	106
4	50 초과 ~ 100 이하	13	17	1,200 초과 ~ 1,500 이하	112
5	100 초과 ~ 150 이하	16	18	1,500 초과 ~ 2,000 이하	118
6	150 초과 ~ 210 이하	23	19	2,000 초과 ~ 2,500 이하	124
7	210 초과 ~ 270 이하	31	20	2,500 초과 ~ 3,000 이하	130
8	270 초과 ~ 330 이하	39	21	3,000 초과 ~ 4,000 이하	136
9	330 초과 ~ 400 이하	47	22	4,000 초과 ~ 5,000 이하	165
10	400 초과 ~ 470 이하	56	23	5,000 초과 ~ 6,500 이하	211
11	470 초과 ~ 550 이하	66	24	6,500 초과 ~ 8,000 이하	266
12	550 초과 ~ 650 이하	78	25	8,000 초과 ~ 10,000 이하	330
13	650 초과 ~ 750 이하	88	26	10,000 초과	367



[과징금 부과 제외기준]

- 법§4 (판매 등 금지) 위반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15일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1개월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3개월 · 음식물폐기
 -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영업정지 7일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15일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1개월 · 음식물폐기
 - 영업허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 · 가공 또는 수입한 것 : 영업정지 1개월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2개월 · 음식물폐기/영업정지 3개월 · 음식물폐기
- 법§37 (영업의 허가 등) 2항 위반
 -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 한 때 :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 법§44 (영업자준수사항) 1항 위반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통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통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 · 묵인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영업소 폐쇄
- 법§44 (영업자준수사항) 2항 위반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3차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
- 과징금을 체납중인 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 과징금 부가제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기준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음.



5)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서 행정의무불이행의 경우 부과(건강진단, 위생교육의무 위반 등)

[건강진단]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종업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미만 위반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위생교육]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영업시설 및 기타]

-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자 :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 · 냉장시설에 보관 · 관리하지 아니한 자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 식품 등의 조리 · 포장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위생모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식품 등의 제조 · 가공 ·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 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위생적으로 보관 · 관리하지 아니한 자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6) 벌칙

가. 개요

행정처분청의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사법기관에서 행하고 그 적용은 일반적으로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수사관)의 직접수사나 행정기관의 고발 등에 의해 수사과정을 거쳐 검사의 기소절차와 법원(판사)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

나. 양벌규정

식품위생법상 벌칙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제100조)

다. 벌칙의 종류

- 제94조(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 법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제95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 제97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신고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 · 폐업 미신고(제37조제4항)
 - 영업자의 지위승계 1개월 이내 미신고(제39조제3항)
 - 관계 공무원의 업소 출입 · 검사 · 수거 · 압류 · 폐기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22조제1항, 제72조제1항 · 제2항)
 -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제36조)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제44조제1항)
 -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 제98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7) 기타처분

가. 기타처분 (법 75조, 영 제52조, 규칙 제89조[별표23])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 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 알선등 행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1차	2차	기타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 3년관리

나.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법 제77조)

[법 제77조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또는 「주세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酒類)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유해 등의 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7조 중 “현저히 유해” 및 “현저히 부족”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주류

허용 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메칠알코올이 1ml당 1mg이상 함유된 경우



1.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3.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경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법 제78조)

[법 제78조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 폐쇄조치 등 (법 제79조, 규칙 제91조)

[법 제79조 (폐쇄조치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 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封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마. 청문 (법 제81조)

[법 제81조 (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3. 제80조제1항 따른 면허의 취소

[영 제52조 (허가취소 등)]

-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6. 수수료

가. 신고 및 허가수수료 (법 제92조, 규칙 제97조[별표2])

[법 제92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⑤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규칙 제97조 (수수료)]

-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 · 등록 · 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나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식품점객업 영업허가 · 신고수수료

[별표 26]

수수료(규칙 제97조 관련)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 28,000원

나. 변경 :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제94조제5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조건부영업허가 :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 :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바.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중독 예방]

1. 식중독의 이해

- “식중독”이란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일어나는 복통, 설사, 구토 등 건강상의 장해를 말하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 식품위생법(제2조제14호)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WHO(세계보건기구)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 특히 집단식중독은 원인 조사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 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을 말한다.
- 식중독은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 또는 구토물 등이 다양한 경로로 음식물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접촉에 의해 직접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74°C , 1분이상)으로 조리하지 않은 경우
 -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5^{\circ}\text{C} \sim 59^{\circ}\text{C}$)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 기구를 살균·세척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세척 소홀, 개인 질병, 식품 취급이 부주의한 경우
 -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2. 식중독 발생 현황

- 최근 식생활 패턴의 음식점 등 외식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학교, 기업체등의 집단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모도 집단화·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기온이 높은 7~8월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나, 5~6월 및 8~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겨울철(1, 2, 12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여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식중독의 종류

식중독은 원인물질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으로 분류되며, 기타 기생충 등에 의한 식중독도 포함한다. 원인물질에 따라 각각 다양한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

[표 2] 식중독 균의 분류

분 류		종 류	원인균 및 물질
미생물 식중독	세균성	감염형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제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독소형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
	바이 러스 성	공기, 접촉, 물 등의 경로로 전염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간염A바이러스, 간염E바이러스 등
자연독 식중독		동물성 자연독에 의한 중독	복어독, 시가테라독
		식물성 자연독에 의한 중독	감자독, 버섯독
		곰팡이 독소에 의한 중독	황변미독, 맥가독, 아플라톡신 등
화학성 식중독		고의 또는 오용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	식품첨가물
		본의 아니게 잔류, 흔입되는 유해물질	잔류농약, 유해성 금속화합물
		제조 · 가공 · 저장 중에 생성되는 유해 물질	지질의 산화생성물, 니트로스아민
		기타 물질에 의한 중독	메탄올 등
		조리기구 · 포장에 의한 중독	녹청(구리), 납, 비소 등



4. 식중독예방 3대 원칙

1) 청결과 소독의 원칙

- 식중독균 → 손, 조리기구 → 식품에 오염 → 실온방식 → 식중독 발생
- 식품을 다루기 전 손을 항상 깨끗이 씻는다.
- 조리기구도 잘 씻는다. 칼, 도마는 식용, 생선용, 채소용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 조리장소는 깨끗이 하고, 살균 · 소독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2) 신속의 원칙

- 식중독균은 실온 (10~40°C)에서 급속히 증식한다.(장염비브리오는 8~20분에 2배로 증식)
-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 부패가 빠른 식품(유류, 어패류 등)은 신속하게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 음식을 미리 만들어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제공하지 말고,
 -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한다.

3)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 식품을 가열 조리할 경우 중심부의 온도가 74°C에서 1분 이상 유지되도록 충분히 가열한다.
-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을 제공할 때에도 충분히 가열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조리기구는 세척 후 살균 및 소독제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도록 한다.
- 식중독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중에는 열에 강한 것(황색포도상구균이 만드는 Enterotoxin 등)이 있기 때문에 가열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5. 식재료의 보관 및 저장 방법

철저한 검수를 거쳐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선택하더라도 적절한 관리와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재료를 저장할 때는 오염 또는 세균의 감염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은 철저하게 시간 및 온도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식재료는 각각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다른 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먼저 들어온 식재료를 빨리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식재료 보관 및 저장시 주의해야 할 내용이다.



- 모든 식재료의 외포장지(골판지)는 완전히 제거하고, 전처리하기 전까지 냉장·냉동 보관한다.
- 저장중인 식품은 대장을 만들어 항상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저장중 식품은 깔판, 선반 또는 용기를 사용하거나 포장하여 보관한다.
- 저장실에는 반드시 방충, 방서시설, 통풍구를 설치하고 식품이 아닌 급식기구 소독제, 세제, 살충제, 청소도구 등을 함께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온도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냉장식품 : 5°C 이하
 ⇒ 냉동식품 : -18°C 이하, 얼은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는 것
 ⇒ 전처리된 채소 : 10°C 이하(일반채소는 상온, 신선도 확인)
- 외부포장 등이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 후 조리실에 반입하도록 한다.
- 곡류, 식용유, 통조림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은 당일 구입하여 당일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보관 상태별로 색을 달리하여 눈에 띄게 표시함으로써 보관이 용이하도록 한다.

[표3] 식재료별 보관법

종 류	보 관 법
육 류	냉장고에 장기간 저장할 때는 냉동시켜 보관
두 부	찬물에 담긴 냉장보관
생 선	내장을 제거하고 흐르는 수돗물(비브리오 예방)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없앤 후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냉장보관
패 류	내용물을 모아서 흐르는 수돗물(비브리오 예방)로 깨끗이 씻은 후 냉장·냉동보관
어 묵	냉장상태로 보관
달 갈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보관(살모넬라 예방)
우 유	10°C 이하로 냉장보관하며 가능한 신속히 사용
채 소	물기를 제거한 후 포장지로 싸서 냉장보관하며 씻지 않은 채소와 씻은 채소가 섞이지 않도록 분리보관
젓 갈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껑을 잘 닫아 보관
양 념 류	물,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
통 조 림	개봉 후 깡통 채로 보관하지 말고 별도의 깨끗한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며 개봉일시를 기록하고 가능한 빨리 사용



[감염병예방 조치와 처벌기준]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2., 2020. 9. 29.>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과태료 10만원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과태료 10만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방역지침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제8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6., 2017. 12. 12., 2019. 12. 3.>



1.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등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고위험병원체의 취급교육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등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재난시의료인에대한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자
- ②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려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것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2020. 3. 4., 2020. 8. 12. >
1. 예방접종기록의 보존 및 보고등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계획등의 보고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의2.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자
3. 소독의무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소독업의 휴업등의 신고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소독의 실시등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감염병관련부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6.] [총리령 제1651호, 2020. 10. 16., 일부 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로 하여금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총리령 제165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1제4호 중 “위생모”를 “위생모 및 마스크”로 한다.

* 별표 17 제7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재난예보·정보체계구축·운영 등)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별표 27 제1호라목 중 “위생모”를 “위생모 및 마스크”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점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정용례)

* 별표 17 제7호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령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유효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1월 6일부터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행

위생모 착용



개정

위생모+마스크 착용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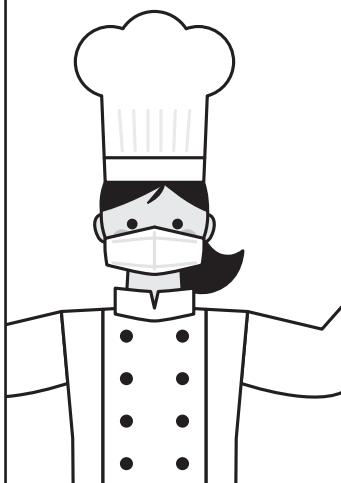
현행

손 소독장치
구비 의무 없음



개정

감염병 유행 시 손 소독 장치
또는 용품 구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 시 처분 기준

	1차	2차	3차
마스크 미착용 위반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40만원	과태료 60만원
손소독 장치 구비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위생관리]

1. 개인 위생관리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원인 중 하나는 건강과 위생이 좋지 않은 조리종사원이 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의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1) 건강진단

- 조리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년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 건강진단 결과 제1군 전염병, 피부병 및 기타 화농성 질환, 제3군 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인 경우 조리에 종사하지 못한다.
- 종사자가 발열, 설사, 복통, 구토하는 경우 식중독이 의심 되므로 조리를 해서는 안되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또한 손이나 얼굴에 화농성 상처나 종기가 있는 경우 치료 후 조리에 참여하도록 한다.

[표 5] 조리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종 류	제 1군 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제 3군 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기타 화농성 질환

[표 6] 조리원의 건강 진단 항목 및 그 회수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회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 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 · 제조 · 가공 · 조리 · 저장 ·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1회/1년
	2. 폐결핵	
	3. 전염성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2) 손 위생

- 손은 가장 외에 노출된 각질층 뿐만 아니라 각질층의 하부, 모근 주위나 땀샘, 지방샘 속에까지 식중독에 원인이 되는 미생물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만질 경우 손에 있는 미생물이 음식으로 전달 될 수 있다.



- 따라서 음식을 취급하는 자는 ① 음식물 취급 준비 전에, ② 화장실 이용 직후, ③ 날고기, 가금류, 생선 등 날음식 취급 후, ④ 코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⑤ 머리나 몸을 긁거나 만진 후, ⑥ 동물이나 분비물을 다룬 후, ⑦ 쓰레기 취급 후, ⑧ 기타 씻어야 하는지 망설여질 때 무조건 씻는 것이 중요하다.
- 손을 씻을 때에는 흐르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손을 적신 후 비누를 사용하여 20초 이상 씻어야 하며, 씻은 후에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도꼭지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 잘못된 조리위생 습관
 - 조리작업 시 손으로 머리를 긁거나 입을 닦는 행위
 -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종이를 넘기는 행위
 - 작업 중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고 껌을 씹는 행위
 - 국자나 스푼으로 직접 음식을 맛보는 행위(적당량의 음식물을 채취 한 후 개별 접시에 담고 깨끗한 스푼을 이용하여 맛을 봐야 함)
 - 손(세척 후) 물기를 앞치마나 위생복에 문질러 닦는 경우

3) 정확한 복장

조리장용	접객장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복은 청결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때, 얼룩이 묻어 있지 않은가? - 다리미질은 잘 되어 있나? - 명찰은 잘 부착되어 있나? - 단추는 잘 잠겨져 있나? • 와이셔츠는 청결한가? • 모자는 깨끗한가? • 앞치마는 청결하며 다리미질이 잘 되었나? • 바지는 깨끗한가? • 지정된 신발을 신고 있으며 청결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폼은 청결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덴자국은 없는가? - 때, 얼룩이 묻어 있지 않나? - 다리미질이 잘 되어 있나? - 명찰은 지정부위에 부착되어 있나? • 와이셔츠는 청결한가? • 넥타이는 청결한가? • 양말은 청결한가? • 바지는 깨끗한가? • 신발은 잘 닦아서 신고 있는가? • 메모용지 · 필기도구는 준비되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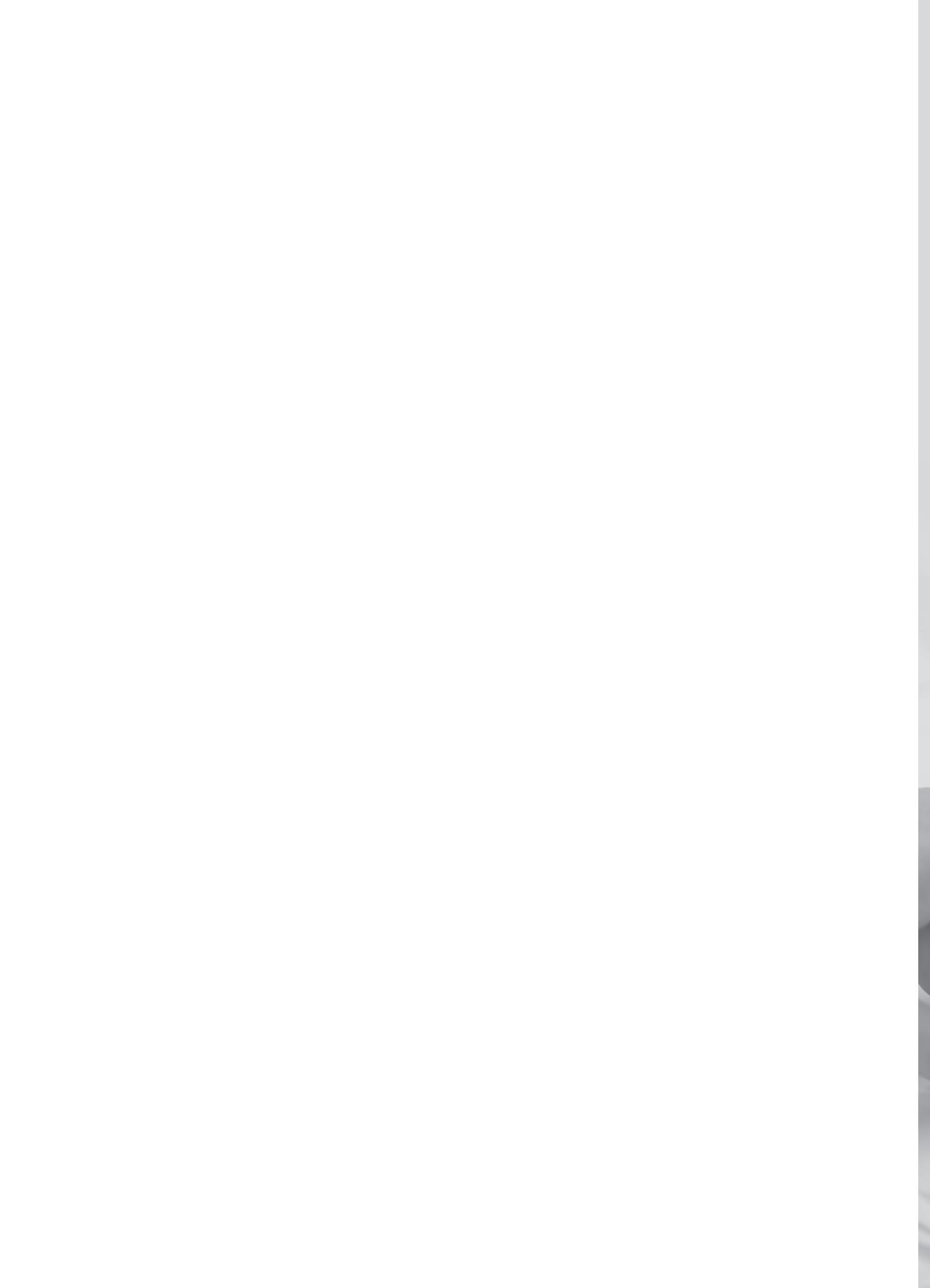


2. 조리기구의 위생관리

식중독 발생에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조리기구에 의한 식품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식기류, 조리용 칼, 도마, 행주 등의 주기적인 살균·소독을 해야하며, 정확한 방법으로 살균·소독하여 유해 미생물을 제거한다.

[표 7] 소독의 종류 및 방법

종류	대상	소독 방법	비고
자비소독 (열탕소독)	식기, 행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탕에서는 100°C에서 5분 이상• 증기소독기 : 100~120°C에서 10분 이상• 재질에 따른 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속재 : 100°C에서 5분, 80°C에서 30분- 사기·토기 : 80°C에서 1분- 천류 : 70°C에서 25분, 95°C에서 10분- 160~180°C에서 15~16초	그릇을 포개어 소독할 때에는 끓이는 시간을 연장
건열소독	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0~180°C에서 30~45분간	
자외선 소독	소독기, 용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균력이 가장 강한 2,537A의 자외선에서 30~60분 조사• 기구 등을 포개거나 엎어서 살균하지 말고 자외선이 바로 닿도록 배치	자외선은 빛이 닿는 부분만 살균됨에 유의
화학소독	작업대, 기기, 도마, 생채소, 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염소 용액 소독<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채소, 과일의 소독 : 100ppm 이상의 염소 용액에 최소 5분간 침지- 빌판소독조 : 100ppm- 식품 접촉면의 소독 : 200ppm 1분 이상• 요오드 용액(기구, 용기소독) : pH5^o하, 24°C 이상, 요오드 25ppm^o 함유된 용액에 최소 1분 침지• 70%에틸알코올 소독(손, 용기등) : 분무하여 건조	반드시 세척 후 사용



A large, semi-transparent grayscale inset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shows a close-up of a person's hand pressing buttons on a white electronic calculator.

단란주점 세무상식





[단란주점 세무상식]

□ 사업자등록 신청

① 연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는 사업을 개시하기전이라도 등록 할 수 있음.

② 구비서류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영업허가증
-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공증용)

③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재제

- 개인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 법인공급가액의 1%



1. 세금의 종류

1. 부가가치세 신고

구분	기간	신고기한
1기 예정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까지 신고
1기 확정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예정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 1) 개인사업자중 과세기간에 환급 또는 납부금액이 없는 사업자간 신규사업자는 당과세기간 정상 신고함.
- 2) 개인사업자 1년에 2번(확정신고시) 예정신고시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고지함.
- 3) 조기환급대상자 : 매1개월, 매2개월 각 분기마다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 4)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단, 법인 공제 안됨) 신용카드 매출액 1.3%인상(년간 700만원 한도) ⇒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몰연장 신용카드 매출액 1.3%인상 (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 신용카드 매출액은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각 카드사 월별명세서 첨부
- 5) 영세율첨부서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수출가공계약서, 납품사실증명서 등
- 6)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신고 : 매년 1월 31일까지
- 7) 대손 세액공제 제도(단, 계속 사업자여야함)
 - 매출채권에 대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시 매출세액에 대하여 공제(부도 확정일 6개월이 되는 달부터 공제가능)
 - 근저당권이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아야하며 부도 확정된 어음, 수표원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 8) 매입세액 공제불가능분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불성실기재,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불성실기재
 -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관련 매입세액, 접대 비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대손처분받은 매입세액



9) 기타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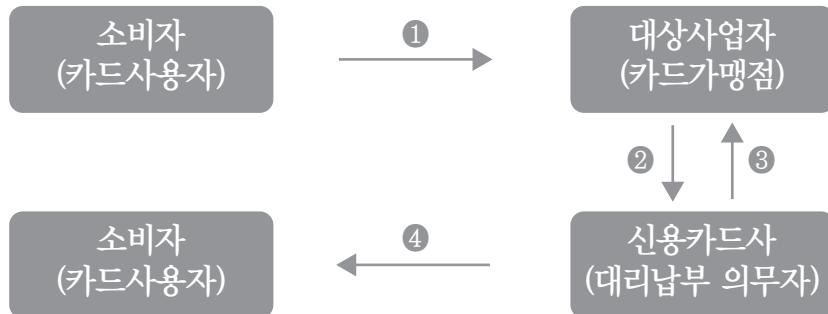
- ①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③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④ 각종 공과금(전기, 전화, 수도요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⑤ 가공세금계산서는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 ⑥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말과 12월말의 대량매입은 세무조사를 자초하는 행위이므로 그 시기를 적절히 판단하여 매입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 단란·유흥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 포함 이하 신용카드라 함)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사에서 4/110를 천진징수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원천징수한 4/110는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흐름도



1. 신용카드 결제 110(공급가액100+부가세10)
2. 대금청구 110

3. 대금입금 106 (4/110차감)
4. 대리납부 4/110-분기말 익월 25일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기업과 개인간에 전자상거래에서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결제카드금액으로 부가가치세액 정도를 원천징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 소비자가 개인은 종전의 방법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업자는 4/110(부가 가치세 상당 금액)을 빼고 106/100을 지급받는다.
-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금액을 타업종 사업자보다 미이용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사의 대리납부액의 1%를 추 가로 세액공제해준다.

3. 세금신고 및 납부방법 등

① 세목별 신고 · 납부기한

구분	신고대상자	신고 · 납부기간	신고 · 납부내용
부가 가치세	일반과세자 1~6월중 개업	7월 25일까지 신고	1.1~6.30간의 사업실적
	일반과세자 7~12월중 개업	1월 25일까지 신고	7.1~12.31간의 사업실적
	간이과세자 1.1~12.31(1년) 개업	1월 25일까지 신고	1년 사업실적

※ 일반과세자 4월과 10월은 예정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없이 확정신고만 함

종합 소득 세	모든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해 5.1~5.31까지	1.1~12.31간의
		중간예납	11.15~11.31까지	연간소득 전년도 부담세액의 1/2
특별 소득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	다음달 25일까지		1개월간의 사업실적



② 관할세무서 및 신고 첨부서류

구분	신고대상자	신고 · 납부기간
	사업장 관할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1부-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전자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전자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 등
종합 소득세	주소지 관할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서 1부-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기장자)-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명세서 등

③ 부가가치세 납세자 유형별 차이점

구분	일반과세자	신고 · 납부기간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가액×업종별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업자(8/108)	음식업자만 적용(8/108)

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① 상호나 업태 ·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②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③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위가 변경되는 때(폐업 후 개업을 다시 해야함)
- ④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 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⑥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하며, 사업을 휴업·폐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폐업·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업자 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됨을 유의

5.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종결 절차

- ①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등록신청을 하는 등 각종 신청·신고를 하였듯이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종결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때,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도 같이 하여야 절차가 간편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폐업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대상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로부터 폐업일까지며, 폐업일 다음달 25일 이내에 이 기간의 영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된다.
- ④ 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음
- ⑤ 법령에 따라 혜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혜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혜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6. 세액공제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 해당업종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 · 미용 · 이발업 · 여객운송업 ·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세무사 · 건축사가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분
- 공제액 : 신용카드 발행금액 × 1.3%(연 500만원한도)
- 소득세 신고 시 영업의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

②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1만원

7. 가산세

구분	적용범위		적용금액	가산세율
①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때 사업자의 명의를 위장하여 등록한 때	공급가액	1%	
		공급가액	1%	
② 매입처별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매입가액을 과다하게 기재 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공급가액	1%
	㉡ 정정시 정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
	㉢ 과세기간 받은 분			1%
	㉣ 가공, 위장매입세금계산서 받은 분			2%
	㉠ 무신고 성실, 환급신고 불성실(국세기 본법 47조)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	20%
		분당 무신고		40%
③ 무신고, 신고불 성실, 환급신고 불성실(국세기 본법 47조)	㉡ 신고불 성실	일반 과소신고	산출세액	10%
		부당 과소신고		40%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 과소납부, 과다 환급받은 때		납부세액	1일 3/10,000



□ 종합소득세의 신고 · 납부

1. 소득세는 사업별로 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그 미만 사업별로 신고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음식업자는 연간 총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작성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2. 작년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자 및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을 신고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주요경비(매입비용, 임대료, 인건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주요경비로 인정하고, 주요경비의 기타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 경비율에 주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 미만인 경우×2.4
 -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 이상인 경우×3(2009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

4. 소득금액 계산

- ① 장부기장의 소득금액=연간총수입금액-필요경비
-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times 2.4 \text{ or } 3$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증빙서류보관
- ③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④ 간편장부기장자에 대한 혜택
 - 복식장부 시 ⇒ 20%(연간 100만원 한도)
 -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및 세부조사 등 제재 조치(연간 수입 금액 4,800만원 미만사업자 제외)
- ⑤ 월별신고 : 급여 및 잡금에 대한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의무
- ⑥ 반기별 신고 : 급여 및 잡금에 대하여 1월~6월분에서 7월 10일까지 그리고 7월~12월분에서 익년 1월 신고, 납부의무
- ⑦ 연말정산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의무
- ⑧ 기타사항 : 급여대장 및 잡금대장은 업체에서 반드시 작성비치
 - 사업용 계좌개설(복식기장의무자로서 음식점업 기준 연간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신규개업자는 5개월 이내, 복식기장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연도부터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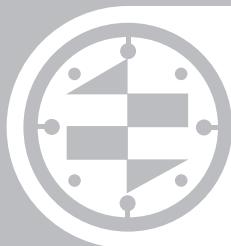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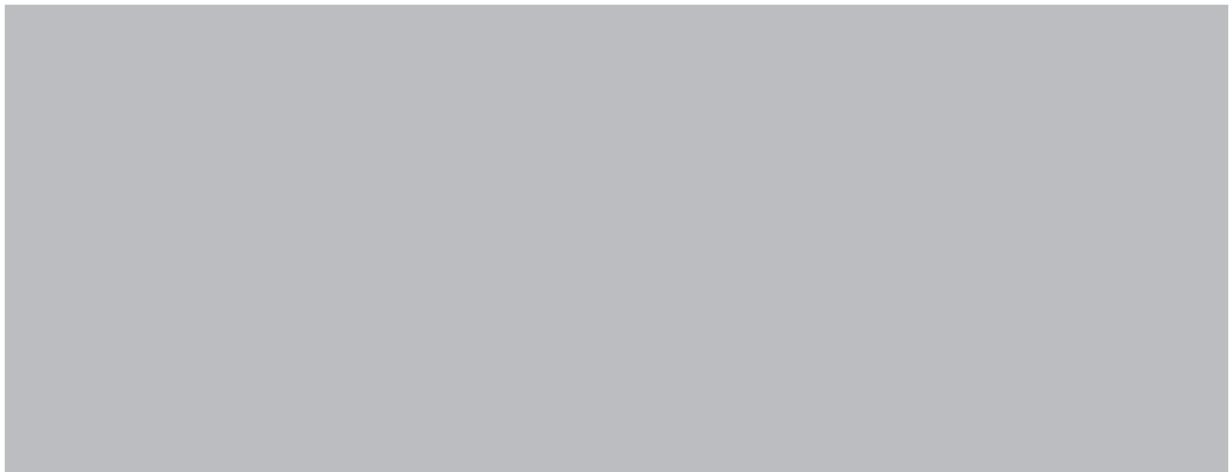


□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 ① 월별신고 : 급여 및 잡금에 대한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의무
- ② 반기별 신고 : 급여 및 잡금에 대하여 1월~6월분에서 7월 10일까지 그리고 7월~12월분에서 익년 1월 신고, 납부의무
- ③ 연말정산 :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의무
- ④ 기타사항 : 급여대장 및 잡금대장은 업체에서 반드시 작성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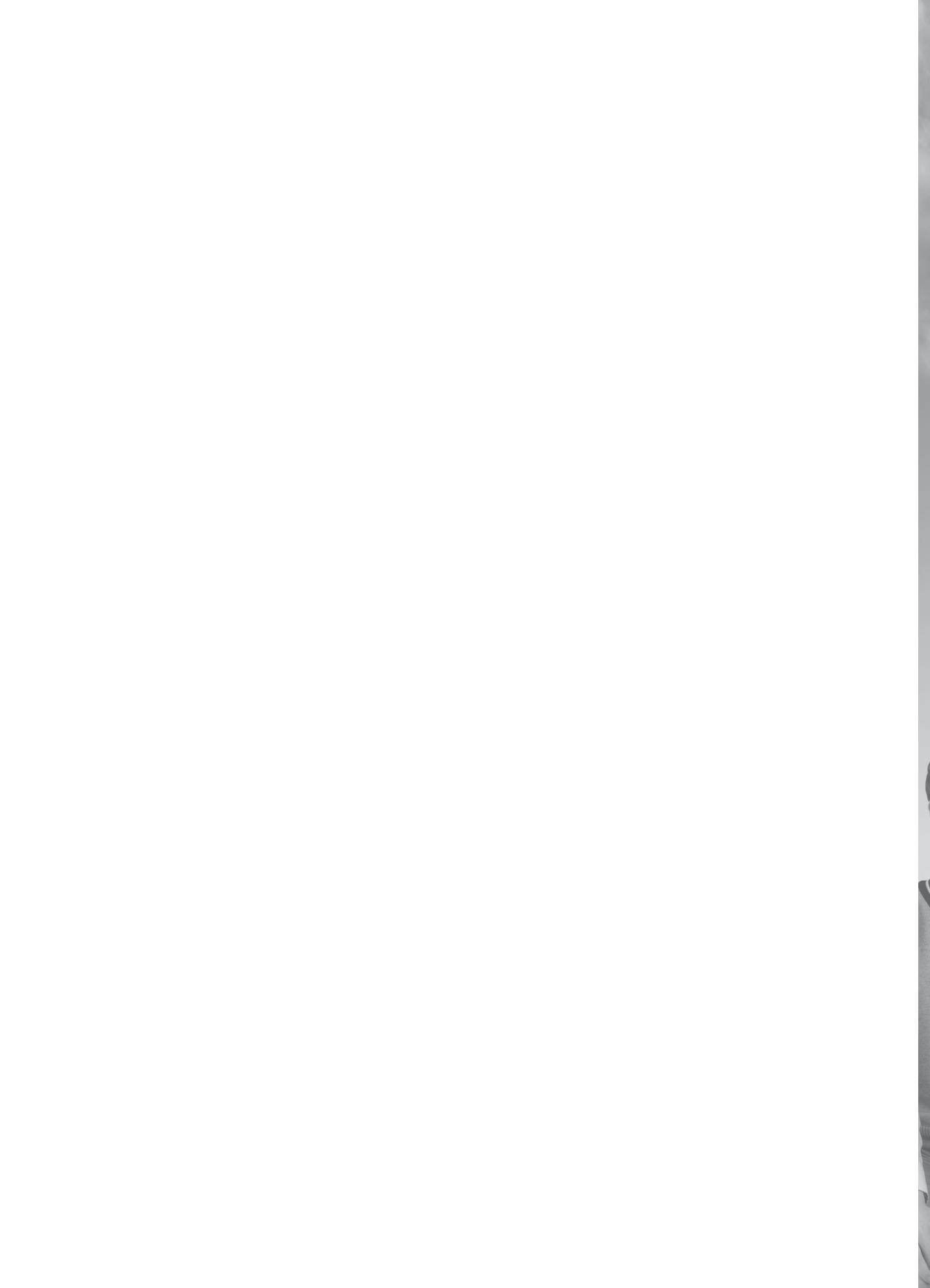
□ 기타사항

- 사업용 계좌개설(복식기장의무자로서 음식점업 기준 연간 1억5천만원 이상인자, 신규 개업자는 5개월 이내, 복식기장의무자로 전환된 연도부터 6개월 이내)



부록







청소년 보호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령의 해설]

1. 청소년보호

- 19세 미만의 자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 유통되는 것과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기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 운영 (2020년 청소년 기준은 2001년생임)
- 식품위생법 또한 각종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규정
- 유해한 약물
 - 주류·담배·마약류 및 중추신경에 습관성·중독성·내성을 유발하는 약품
- 청소년 유해업소
 - 허가·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하여 구분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그리고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 되는 업소로 분류
-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과 단란주점영업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집·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 청소년 관계법령 연령기준

법률명	적용연령	명칭	소관부처	비고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	청소년	여성가족부	
풍속영업의 규제 에 관한 법률	"	-	경찰청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법률	"	-	"	
국민건강증진법	"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	"	-	"	
식품위생법	"	청소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연소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	"	"	
영화진흥법	18세 미만 (고등학생 제외)	"	"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아동	보건복지부	국제협약에 준거
근로기준법	"	연소자	노동부	ILO협약에 준거
민법	20세 미만	미성년자	법무부	혼인적령(만18세)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	문화체육관광부	
형법	14세 되지 아니한 자	형사 미성년자	법무부	
보자보건법	출생 후 6세 미만자	영유아	보건복지부	
생활보장법	18세 미만자	아동	보건복지부	
고직선거법	20세 이상 국민	선거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세 미만 국민 : 선거권없음



□ 청소년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등 (제 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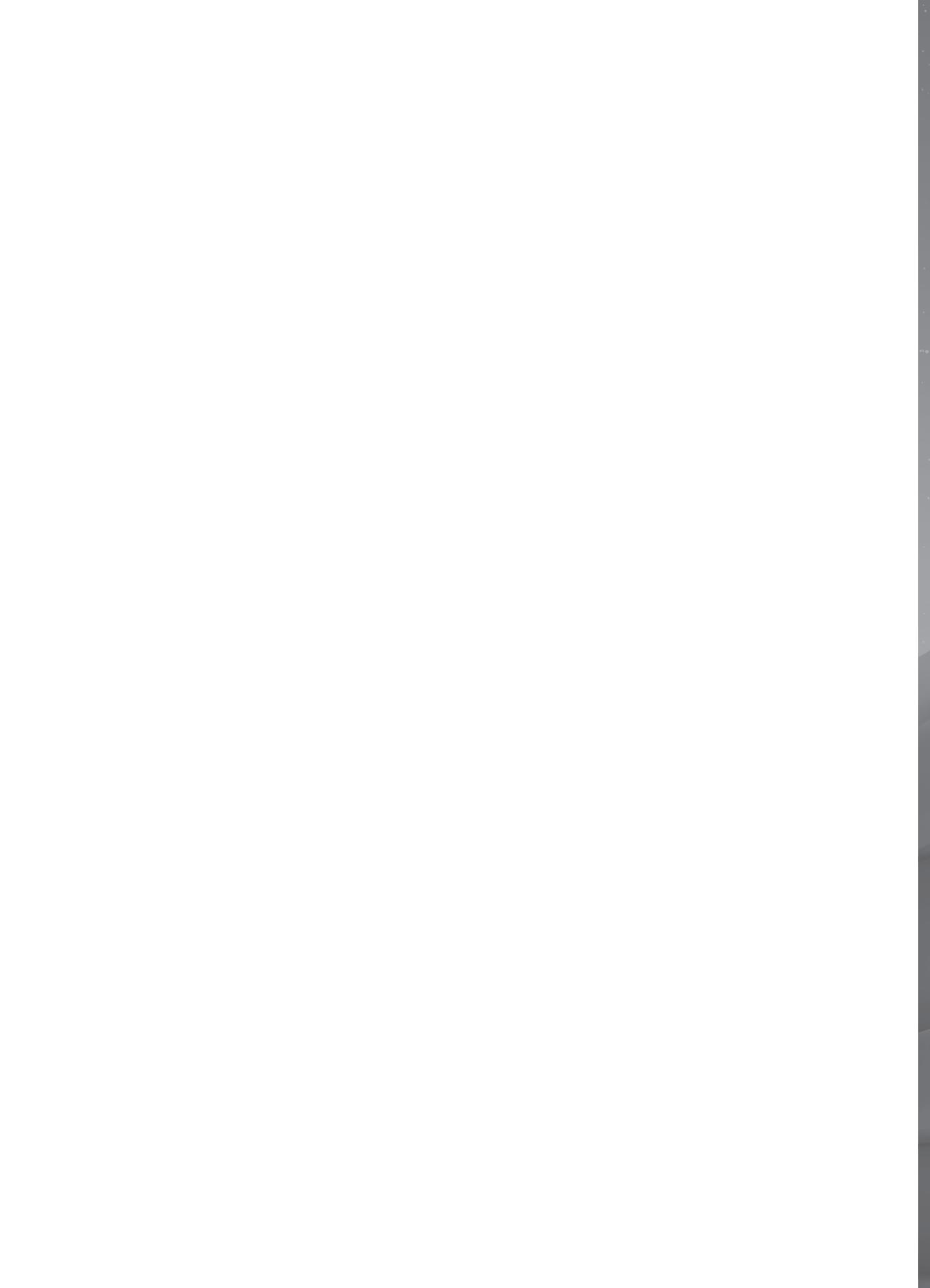
-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청소년출입 · 고용제한 표시(영 제19조의 2)(의무사항)
- 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4의 2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 · 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사단
법인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별표 4의 2)



자율지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자율지도 운영관리지침]

가. 목적

식품위생지도업무를 동업자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동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다. 적용단체 및 대상업소

적용단체는 식품위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 조합이며 대상업소는 동업자 조합에 가입한 업소를 원칙으로 함.

라.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명

(가) 자율지도원의 자격

- 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
- ② 단체 또는 그 업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과정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 등 동업자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자
- ③ 다만, 위의 해당하는 자라도 공무원 임용상 결격 사유가 있는자는 제외

(나) 자율지도원의 임명

- ① 자율지도원의 임명은 위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지역 및 대상 업소 수를 감안하여 단체의 장이 적정한 인원을 임명한다.
- ② 단체의 장이 자율지도원을 임명한 때에는 자율지도원증을 발급하고 자율지도원 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자율지도원의 관리를 위해 자율지도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자율지도원의 업무범위

-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 ②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건강진단, 기타 위생관리의 지도
- ③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지도 및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조건 이행 지도



마. 자율지도원의 복무 및 교육

(가) 자율지도원의 복무

- ① 자율지도를 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 또는 권한을 넘는 행위 금지
- ② 직무와 관련하여 지도·단속 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수수 등 부조리 금지
- ③ 자율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 금지
- ④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조합업소 또는 영업자 등의 비밀사항 누설금지

(나) 자율지도원교육

- ① 단체의 장은 자율지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 이 경우 별도의 공공 식품위생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다른 자율지도단체와 통합하여 실시 가능
※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교육으로 실시
- ② 교육 내용은 관련법규, 업종 관련 전문교육 및 정부시책 등으로 하고, 교육 시간은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 단체의 자율지도 규정

- ① 단체의 장은 자율지도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지도 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 i) 자율지도원의 권한 및 의무
 - ii) 자율지도원의 정원, 자격기준 및 임명절차
 - iii) 자율지도 대상업소
 - iv) 자율지도시 지도·점검사항
 - v) 자율지도의 세부절차
 - vi) 자율지도 결과의 처리방법
 - vii) 기타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자율지도의 실시 및 실적보고

(가) 자율지도 실시

- ① 단체의 장은 자율지도지침에 따라 자체 자율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2회 이상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자율지도계획은 사업년도 시작 1개월 전에, 자율지도 실시결과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지도원은 자율지도시 자율지도원증을 제시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지도점검결과를 자율지도 점검기록부에 기록하고 자율지도원과 영업자(또는 대리인)가 각각 확인·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업소에 비치·보관한다.

(나) 자율지도 결과의 처리

① 단체의 장은 자율지도 결과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i) 위반사항이 관련 행정처분기준에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대상에 해당된 경우 기일을 정하여 영업자가 시행하도록 자율지도 시정지시서(자율지도규정 별지 제4-3호 서식)를 1회까지 발부한 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당해 업소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체의 장(지부장)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당해 허가(신고)기관은 동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단체의 장(지부장)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사. 행정사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지도단체의 원활한 자율지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자율지도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발행번호 NO.

자율지도 시정지시서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업 소 명		업 종		허가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 위반유형 : [식품위생법 제 조]

• 위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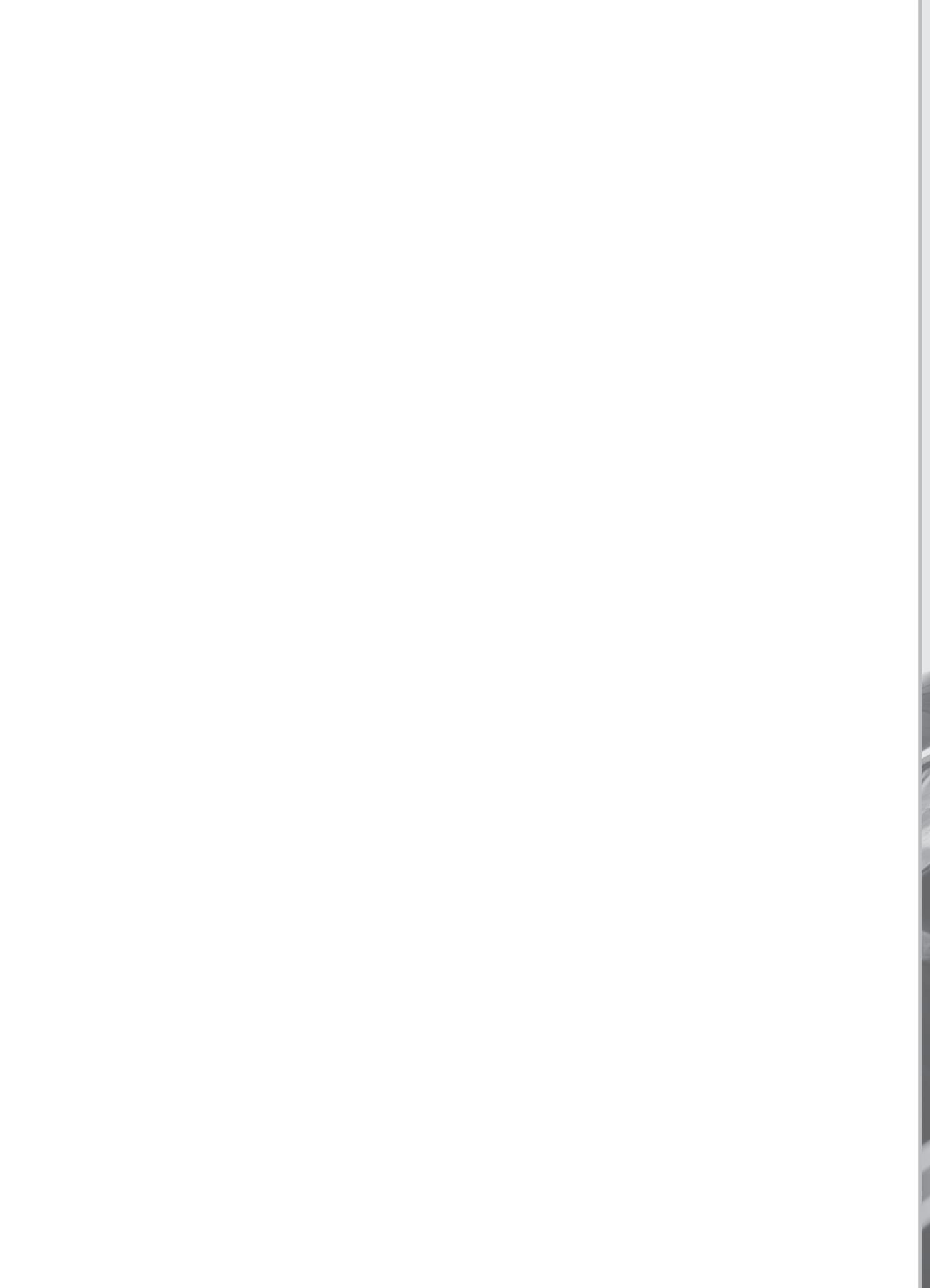
- 1.
- 2.
- 3.

귀 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점검결과 위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귀하의 권익을 타율(他律)이 아닌 자율(自律)로서 사전에 보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 10일 이내에 위 사항을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기간 경과 3일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

297mm × 210mm 모조지 60g/m²





소방관련 법규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소방관련법규]

1. 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과태료! ※

1.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소화기		① 대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룸)마다 설치
자동확산 소화기		① 대상 : 고시원 · 산후조리원 · 지하층 · 밀폐구조영업장 · 실내권총사격장 ② 설치기준 :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 클러 설비 (캐비닛형 포함)		① 대상 : 고시원 · 산후조리원 · 지하층 · 밀폐구조영업장 · 실내권총사격장 ② 설치기준 : 화재안전기준(NFSC 103)

2)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① 대상 : 모든 영업장 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마다 설치
자동화재 탐지설비		① 수신기 : 영상음향장치가 설치된 영업장 마다 별도 설치 ②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노래방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가스누설 경보기		① 대상 :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 이 있는 영업장 ② 설치기준 : LPG : 감지부를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 LNG : 감지부를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



3) 피난설비

피난기구		<p>① 대상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 (발코니 · 부속실)</p> <p>② 설치기준 : 위치, 구조에 따라 적정기구 비치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p>
피난유도선		<p>① 대상 : 단란주점업 · 유흥주점업 · 영화상영관 · 복합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감상실업 · 노래연습장업 · 산후조리업 · 고시원업</p> <p>② 설치기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복도, 전기(전류)에 의해 빛을 내는 방식 으로 설치</p>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p>① 대상 : 모든 영업장</p> <p>② 설치기준 : 출입구, 비상구, 복도, 통로 등에 설치</p>
휴대용 비상조명등		<p>① 대상 : 모든 영업장</p> <p>② 설치기준 : 구획된 실마다 1개씩</p>

2. 비상구

	<p>① 대상 : 모든 영업장</p> <p>② 설치기준 : 영업장마다 설치(복층구조일 경우 각 층마다) • 위치 - 출입구로부터 영업장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반대방향 - 불가피한 경우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곳 • 규격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 문의 열림방향 : 피난방향 • 문의 재질 : 방화문 또는 불연재문</p>
--	--

*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 설치



2.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거나 피난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 피난안내도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이용객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 피난계단 · 피난통로 ·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 비치

1) 비치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설치 제외 장소

- ①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m² 이하인 경우
- ②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1)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2) 구획된 실(室)의 벽, 턱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3)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각 책상
(컴퓨터 작동시 피난안내도가 나오는 경우 대체 가능)

3)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2)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3)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4) 피난 및 대처방법

4)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 (1) 크기 : • B4(257mm × 364mm)이상
 - A3(297mm × 420mm)이상 :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 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m² 이상인 경우

(2) 재질 : 종이(코팅처리한 것),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

5) 피난안내도에 사용하는 언어

피난안내도는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피난안내도 예시

피난안내도

EMERGENCY EVACUATION

소화기 사용법 How to use the fire extinguisher

1.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습니다.
PULL THE PIN
2. 한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 손은 호스를 잡습니다.
AIM AT THE BASE OF THE FIRE
3.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SQUEEZE THE LEVER
4. 상하 손잡이를 누르고 빗자루로 쓸 듯 뿌립니다.
SWEEP FROM SIDE TO SIDE

화재시 대피방법 Guidelines on evacuation in case of a fire

1. 손수건, 옷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Cover your nose and mouth with a handkerchief or cloth.
2. 자세를 낮춘다.
Lower posture.
3.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Hold onto the wall with another hand.
4.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Quickly evacuate.

3번 2번
1번
무대 **카운터**
주방

소화기 손전등 비상벨
비상구 현위치 피난동선

3. 소방안전교육

※ 소방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외

- ① 국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 후 3개월이내 받아야 한다.
- ②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 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 등

신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수시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교육시간	4시간 이내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이수증명서 훼손시 재교부 신청 가능

인터넷 주소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www.kfsi.or.kr>



4.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1)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
- 2)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2. 보험금 (보험 한도액)



3. 가입의무 제외 대상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4. 지급사례

- 충북 보은 ○○클럽 화재(사망 4, 부상 5)
- 보험가입금액 : 26,000원(○○손해보험)
- 보험금 :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병원치료비+a



5.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1. 과태료 (300만원 이하)

- 1) 과태료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2) 부과대상
 -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2)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 (3)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 (5) 내부구획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 · 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 (6)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7)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사람
 - (8)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 (9)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 (10)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 (1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이행강제금 부과

- 1) 사유 및 대상
조치명령(안전시설 등 시정보완명령 등)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최초 조치명령일로부터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 · 징수)
- 2) 부과권자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3)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1천만원 이하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1. 소방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2.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지 않은 경우 1) 안전시설 등의 작동 ·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	
2) 안전시설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지한 경우 ①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지한 경우 ② 수신반(受信盤)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지한 경우 ③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지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④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⑤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아니하거나 소화약제(消火藥劑)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지한 경우		100	
3)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	
4) 비상구를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0	100	300
5)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놓은 경우	50	100	300
3. 안전시설 등 설치 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 1)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2)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 3)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4.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5. 내부구획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 · 유지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6.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 · 훼손 ·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0	100	300
7.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8.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9.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0 ~ 300	
10. 보험회사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300	
11. 보험회사가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300	
12. 보험회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300	
13.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300



저작권료 안내

음악저작물 사용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음악저작물 사용료)안내]

❶ 음악저작권이란

저작권은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 및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음악등을 창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이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용허락)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작재산권은 다시 복제권, 공중 송신권, 공연권, 대여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음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자(예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백화점 등)는 반드시 저작권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사용승인을 청탁하고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

❷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작사자, 작곡자등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사 · 음반제작사 · 노래연습장 · 단란주점 등 음악사용자들이 음악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음악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4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위탁관리업(신탁관리)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 및 사용료의 징수 · 분배 업무를 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즉, 저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고, 유흥주점 · 단란주점 · 노래연습장 등을 경영하는 업주도 하루에 수백여 곡에서 수백 곡씩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저작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용허락을 받고 음악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저작권신탁관리 단체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음악저작권 관리 단체를 두고 있다.



● 음악사용료 징수금액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는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작자와 이용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저작권사용료는 저작물의 가치, 저작자의 인지도, 저작물의 사용방법 및 기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수많은 이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단란주점·노래연습장등의 운영자가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하여 개별적 협상을 하도록 하게 되면 권리자와 이용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백화점·에어로빅 등의 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 징수한 저작권사용료는 어디에 사용되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체로서 방송사·노래연습장·단란주점·유흥주점·커피숍·체력단련장·음반제작자등 음악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전액 해당 저작자에게 분배해주고 있다.

저작권사용료의 분배방법은 공연·공중송신권·복제 등 각 사용형태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데 기본 원칙은 징수한 사용료는 실제로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분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용료는 외부의 모니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매일 방송되는 모든 음악을 모니터링해서 사용된 횟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분배하고 있으며, 녹음사용료나 출판사용료는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래에 대하여만 사용허락과 사용료를 징수하여 분배하고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문제는 이들 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수만 개에 달하고 1개 업소의 매월 사용료는 몇만원에 불과한 반면 매월 음악사용량은 수백 번에서 수천여 번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모니터링하여 분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하여 표본 추출방식, 또는 노래연습장기기에 수록되어 있는 곡을 기준하여 분배하고 있으며 협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❶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전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게되면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위반으로 동법 제136조(벌칙)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과 동법 제12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❷ 사용료 납부방법 및 연체하였을 경우

- 본 협회가 발행하는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신청을 통한 납부
- 월정사용료를 연체하게 되면, 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제11조(연체가산금)에 따라 월3%의 연체가산금과 매월1.2%의 증가산금이 추가됨.

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해당규정발췌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준합니다.

- 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및 극장식 식당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유흥주점〉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	비고
1	66m ² 미만	31,000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m ² 이상 99m ² 미만	40,000	
3	99m ² 이상 132m ² 미만	49,000	
4	132m ² 이상 165m ² 미만	58,000	
5	165m ² 이상 198m ² 미만	68,000	
6	198m ² 이상 매 33m ² 과시 마다	9,000원씩 추가 최고 287,000원	



② 단란주점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 한다.

〈단란주점〉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	비 고
1	66m ² 미만	27,000	농어촌 지역의 음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 (1등급 제외)
2	66m ² 이상 99m ² 미만	35,000	
3	99m ² 이상 132m ² 미만	43,000	
4	132m ² 이상 165m ² 미만	52,000	
5	165m ² 이상 198m ² 미만	60,000	
6	198m ² 이상 매 33m ² 과시 마다	8,000원씩 추가 최고 230,000원	

③ 노래 연습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방1개당 면적 별 월정액을 합산한 총액에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노래연습장〉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	비 고
1	6.6m ² 미만	5,000	농어촌 지역의 음면 단위에서는 방당 500원씩 감한다.
2	6.6m ² 이상 13.2m ² 미만	6,000	
3	13.2m ² 이상 19.8m ² 미만	7,000	
4	19.8m ² 이상	8,000	

④ 게임방 등에서 노래반주기 또는 댄스 게임에 의한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 노래반주기 : 기기 1대당 월 3,000원
- 댄스게임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 멀티기기 : 기기 1대당 월 2,000원



❶ 저작권료 체납의 경우

저작권법이 2006년 12월 28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에 따라 귀 영업장에 관련된 변경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변경된 주요사항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에 피해자(저작권자)만이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2007년 6월 29일 이후부터는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

예를 들어, 귀 영업장은 적법하게 권리자(협회)로부터 이용허락(매월저작권료납부)을 받고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권리자(협회)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사기관에서도 임의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제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바뀐 다른 사항은 종전에는 고소이후에 양 당사자간 합의로 고소취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설혹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었다하더라도 고소취하를 할 수 없게 되며, 더불어 검사는 반드시 기소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1항(권리의 침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음악저작권사용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본부) 代 (02)2660-0400

지부명	주소	전화번호	FAX	우편번호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내발산동) 3층	02-2660-0652	02-2660-0659	07647
인천지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내발산동) 3층	02-2660-0672	02-2660-0679	07647
경기지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7번길 7 아트프라자 801호	031-226-8303	031-226-8306	16568
강원지부	강원도 원주시 도말리길 88/2층(개운동)	033-746-1333 033-746-1340~1	033-746-1666	26443
충청지부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97번길 9/ 707호(용전동, 종근당빌딩)	042-638-7695	042-672-6714	34540
호남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81 / 3층(농성동, 케이앤드디엠빌딩)	062-364-6121~3	062-364-6124	61936
경북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30길 68/4층(신천동, 영일빌딩)	053-756-1613~5	053-756-1625	41251
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127번길 23/2층(소답동, 근현빌딩)	055-295-3112	055-295-0509	51201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33번길 47/10층(광안동, 마린빌딩)	051-462-5112	051-466-1090	48303
제주지부	제주시 신광로 15 2층/205호(연동, 제주CBS방송국)	064-747-0986	064-747-0987	63125



전국지회 지부현황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전국 지회 · 지부 현황

중앙회				
	주소	사무실	FAX	우편번호
중앙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9 보은개발빌딩 402호	02-2058-0823~5	02-2058-0826	04303

서울지회				
지회별	주소	사무실	FAX	우편번호
강남구지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9 보은개발빌딩 402호	02-2058-0823~5	02-2058-0826	04303
서초구지회		02-2058-0823~5	02-2058-0826	04303
영등포구지회		02-2636-2540	02-2631-2553	04303
송파구지회		02-412-1967	02-412-1968	04303
강동·하남시지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41가길 64(102호)	02-476-0012	0504-016-8088	05308

전국지회				
지회별	주소	사무실	FAX	우편번호
부산광역시지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6번길 7 한국해기학원 3층	051-463-4271	051-463-4240	48730
대구광역시지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66-1	053-422-6416~7	053-422-6418	41581
대전·충남·세종특별시지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17번길 24	042-242-8200~1	042-242-5552	34837
인천광역시지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71(2층)	032-875-8661~2	032-875-8663	21396
광주광역시지회	광주광역시 북구 죽봉대로 204-1(4층)	062-526-8611~2	062-526-8612	61233
울산광역시지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67번길 42(3층)	052-258-0585	052-258-0580	44691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97 2층	031-233-7445, 244-1630	031-233-7446	16568
충청북도지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69번지 6층	043-252-1379, 222-8112	043-255-2096	28419
경상남도지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1(영회상가 307호)	055-266-3331	055-266-3332	51515
경상북도지회	경상북도 구미시 애은로 650(지산동 201)	054-458-5167	054-455-8751	39194
전라남도지회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95-7, 하나빌딩 3층	061-654-2113	061-654-1949	59713
전라북도지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86 이화빌딩 3층	063-224-6669	063-224-6944	54910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 중앙로 177 제주은행 3층	064-751-5123~4	064-751-5125	63197
강원지회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59 2층	033-633-1741	033-632-1741	24842

**부산광역시지회(부)**

지회별	주소	사무실	FAX	우편번호
사하지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4(당리동)	051-293-5804	051-293-6488	49328
남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0번길 32(광안동)	051-627-6291~2	051-627-6293	48316
중구지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6번길 7 한국 해기학원 3층	051-463-4271~2	051-463-4240	48730
금정지부				
사상지부				

전라남도지회(부)

지회별	주소	사무실	FAX	우편번호
여수시지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95-7, 하나빌딩 3층	061-654-2113	061-654-1949	59713
목포시지부	전라남도 목포시 변화로 72-2, 2층	061-245-4335	061-245-4335	58753

전라북도지회(부)

지회별	주소	사무실	FAX	우편번호
전주시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94-13, 3층	063-221-4357	063-221-4359	54932

강원도지회(부)

지회별	주소	사무실	FAX	우편번호
강릉시지부	강원도 강릉시 동부시장1길 1(옥천동 새마을금고 3층)	033-647-7005	033-647-7010	25552

경기지부

지회별	주소	사무실	FAX	우편번호
광명지부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45	02-2616-8746	02-2616-8727	14201
안산시지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일번지프라자 311호	031-414-2987	031-413-2987	15477
평택시지부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 5번길 14-2	031-656-6292	031-656-6293	17914
시흥시지부	경기도 시흥시 평안상가 4길 24-6 3층	031-433-2333	031-433-0553	15062

중앙회 직할 서울 경기도 지역

구별	성명	핸드폰	구별	성명	핸드폰
광진구·성동구·강북구	임 순	010-7124-1500	종구·은평구·성북구	중 앙 회	02-2058-0823
성남시	김 재 권	010-5313-3614	중랑구·노원구·도봉구·의정부시	홍 남 표	010-3783-2523
종로구·서대문구	중 앙 회	02-2058-0823	용산구·금천구·구로구·강서구·양천구	김 창 섭	010-3705-0116
동대문구	정 남 연	010-3735-2750	경기북부	중 앙 회	02-2058-0823
관악·마포구·고양시·김포시	조 을 준	010-3395-1360			

단란주점 영업자 위생교육 교재

- 발행일 : 2021년 1월
 - 발행인 : 이 부 규
 - 발행처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중앙교육원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9(서계동)
보은개발빌딩 (4층) 우.04303
T. 02)2058-0823 F. 02)2058-0826
admin@danranmembers.or.kr
-

감수 : 기획실장 이상일, 교육국장 박현석

※ 비매품 (발행자 허락없이 책자 내용을 무단복제 금지)